

『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8일

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,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재난취약계층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지원대상 : 재난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)
 - 지원범위 : 단독경보형감지기, 소화기 등 설치 / 전기·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
-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,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○ 본 『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』 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라 가스누출, 전기누전 등 주택화재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